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8367호

시행일자 2015. 01. 09.

수 신 16개 시도지사회장, 26개 학회장, 20개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약제기준부-4507('14.12.30) "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"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'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'를 개정한 바,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소속회원들에게 안내바랍니다.

붙 임 : 주요공고개정 및 공고전문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”

